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1. 11. 8

제안자 : 이길하 의원

1. 수정이유

- 부칙 제1항 중 일부 조문상 모호한 자구 및 문맥을 변경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부칙 제1항 중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

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 를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

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 로 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582호중 개정조례안 부칙 제1항 중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

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 를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

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 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<p>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